

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적용기준 안내 (2022.5.1. 시행)

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(「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」 [별표 1] 제2호)	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	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	의무설치 편의시설 유형
① 가목 (1) - 슈퍼마켓, 일용품(식품·잡화·의료·완구·서적·건축자재·의약품·의료기기 등) 등 소매점	50㎡미만	미대상	미대상
	50㎡이상~299㎡이하	신축, 증축(별동), 개축(전부), 재축	주출입구 접근로,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, 출입구(문)
	300㎡이상~1,000㎡미만	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, 대수선, 용도변경	
② 가목 (2) - 휴게음식점·제과점	50㎡미만	미대상	미대상
	50㎡이상~299㎡이하	신축, 증축(별동), 개축(전부), 재축	주출입구 접근로,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, 출입구(문)
③ 가목 (3) - 이용원·미용원	50㎡미만	미대상	미대상
	50㎡이상~499㎡이하	신축, 증축(별동), 개축(전부), 재축	주출입구 접근로,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, 출입구(문)
	500㎡이상	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, 대수선, 용도변경	
④ 가목 (4) - 목욕장	300㎡미만	미대상	미대상
	300㎡이상~499㎡이하	신축, 증축(별동), 개축(전부), 재축	주출입구 접근로,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, 출입구(문)
	500㎡이상	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, 대수선, 용도변경	

⑤ 가목 (8) - 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·조산원·산후조리원	100㎡미만	미대상	미대상
	100㎡이상~499㎡이하	신축, 증축(별동), 개축(전부), 재축	주출입구 접근로,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, 출입구(문)
	500㎡이상	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, 대수선, 용도변경	주출입구 접근로, 장애인전용주차구역,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, 출입구(문), 복도, 계단 또는 승강기, 장애인용화장실(대변기)
⑥ 나목 (1) - 일반음식점	50㎡미만	미대상	미대상
	50㎡이상~299㎡이하	신축, 증축(별동), 개축(전부), 재축	주출입구 접근로,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, 출입구(문)
	300㎡이상	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, 대수선, 용도변경	주출입구 접근로, 장애인전용주차구역,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, 출입구(문)

※ 이 안내는 「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」 개정·시행(대통령령 제32607호, 2022.4.27. 공포, 2022.5.1. 시행)으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주요부분 변경(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, 대수선, 용도변경)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각 설치대상별 편의시설 설치의무 적용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됨

※ 적용 사례(일반음식점)

- ① 최초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중 50㎡ 미만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미대상이나, 이후 주요부분 변경의 건축행위가 있어 해당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편의시설을 의무설치함
- ② 신축, 증축(별동), 개축(전부), 재축에 따라 해당 일반음식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㎡이상~299㎡이하가 되는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,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, 출입구(문)을 의무설치함(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적용하는 내용)
- ③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, 대수선, 용도변경에 따라 해당 일반음식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㎡이상이 되는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, 장애인전용주차구역,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, 출입구(문)을 의무설치함(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)